

2018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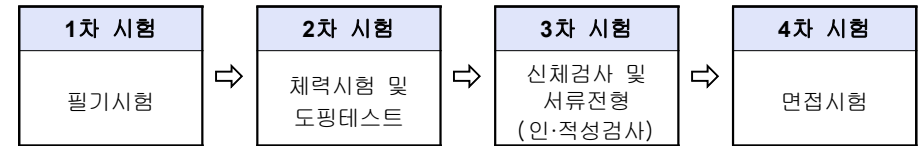
전라남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채용 방법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 시험과목	시험 시간	
			계	남	여	양성			
계		18개 분야	375	258	40	77			
공개경쟁 채	지 방 소방사	소 방	151	136	15	-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 11:40 (100분)	
경력경쟁 채	지 방 소방교	법 무	1	-	-	1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10:00 ~ 11:00 (60분)	
		건축안전진단	1	-	-	1			
		회 계	1	-	-	1			
	지 방 소방사	구 조	55	55	-	-	◇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90	65	25	-			
		운 전	자동차운전	12	-	-			12
			기종기 조종사면허	3	-	-			3
		자동차정비	2	-	-	2			
		기관사(소방정)	2	2	-	-			
		심리상담사	6	-	-	6			
		언론공보	2	-	-	2			
		건 축	10	-	-	10			
		토 목	2	-	-	2			
		조 경	1	-	-	1			
		전 기	7	-	-	7			
		화 학	6	-	-	6			
		정보통신	18	-	-	18			
소방분야 출 입 자	5	-	-	5	◇ 필수(3):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P.5 응시자격 참조), 경력경쟁채용시험(거주지 제한 없음)

2 시험방법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100점 만점)

- 1)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함(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10:00 ~ 11:40 (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10:00 ~ 11:00 (60분)
- 3)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함(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4)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5)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별첨2**)
- 6)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

영역	세 부 과 목 및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별첨1)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소방분야출입자(경력경쟁채용)의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함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각 종목별 10점 만점) 및 도핑테스트

- 1)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2)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별첨 3)
- 3)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름(별첨 4)
- 4)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함(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별첨 5, 6)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인·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 1)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필요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실시)하며, 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함
- 2) 인·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 서류전형 안내

-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 가산특전,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1)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함
- 2) 1·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함(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 구급분야(남·여) 및 운전분야(자동차운전·기중기조종사면허)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동일분야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따른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양성·남·여 구분 모집

라.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2018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해당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 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따름

바. 자격 면허증, 경력제한

채용방법	분 야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경력경쟁채용	법 무 (지방소방교)	법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법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건축안전진단 (지방소방교)	아래의 1~2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 하여야 함 1.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 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 관련 자격증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 자격자 분야만 해당)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회 계 (지방소방교)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회계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회계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세무회계·기업 회계 1급(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회계 관리 1급(상일회계법인), FAT 1급(한국공인 회계사회) 2. 회계학과·회계세무학과·경영회계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회계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채용방법	분 야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 용	구 조 (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 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안 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 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 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하급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하급 간호사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 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운전/ 자동차운전 (지방소방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
	운전/ 기종기조종사면허 (지방소방사)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종기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방법	분 야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 용	자동차정비 (지방소방사)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차차, 굴절 및 고가 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기관사[소방정] (지방소방사)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승무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심리상담사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심리상담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심리상담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 심리학회) 1급 이상,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이상 2. 상담학과·심리학과·심리상담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심리상담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언론공보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언론정보학과·언론홍보학과·신문방송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언론공보분야 실무경력이란 정부기관·기업체·언론사 등에서 홍보전략 수립, 홍보 콘텐츠 작성 및 편집 등 실무 경력을 말함 ※ 언론관련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3>에 따름

채용방법	분 야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 용	건 축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건축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2.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건축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토 목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토목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토목관련 자격증: 기술사(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과·토목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토목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조 경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조경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조경관련 자격증: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2. 조경학과·녹지조경학과·산림조경학과·환경조경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조경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채용방법	분 야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 용	전 기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전기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기능장,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2.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전기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화 학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화학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관련 자격증: 화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2.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화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정보통신 (지방소방사)	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통신기능장,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소방분야졸업자 (지방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 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소방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격·면허증, 경력,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3)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기간·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6)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단계별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채 용 □ 경력경쟁 채 용	2018. 2. 26.(월) ~ 3. 2.(금) (09:00~21:00) ※취소기간: 2. 26.(월) ~ 3. 5.(월)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	3. 28.(수)	4. 7.(토)	4. 20.(금)
			체력시험	4. 20.(금)	4. 24.(화) ~ 4. 27.(금)	5. 10.(목)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5. 10.(목)	5. 23.(수) ~ 5. 29.(화)	6. 14.(목)
			면접시험	6. 14.(목)	6. 19.(화) ~ 6. 22.(금)	7. 5.(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휴일(3.1.)도 접수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함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나. 필기시험 출제문제 문의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18. 4. 7.(토) 12:00 ~ 4. 10(화) 18:00 / 4일
-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http://119gosi.kr>)
- 3) 신청절차 : 인터넷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 첨부
※ 응시자는 2018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서(별첨 9) 작성 첨부
- 4)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등 질의
※ 채용시험 문제공개 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2)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 바랍니다.
- 3) 응시수수료: 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5,000원
-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3.5cm(가로)×4.5cm(세로),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단, 자격증 등 가산특전과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를 실시함
- 5)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청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 선택하여야 함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1%~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별첨7)**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2)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서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함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자.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함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아니함

카.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시험 관련: ☎061- 286- 3371~6) 및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061- 286- 0724~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별첨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폐거·복합·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별첨 2]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별첨 5]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 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 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 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성 별 : 여 ☐ 남 ☐
3. 생년월일:.....	4. 응시번호:.....
5. 핸드 폰:.....	6.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증빙자료에는 포괄적인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 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1회 ☐ 응급 ☐ 기간(주/월).....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서명:..... 날짜:.....

5. 응시자 서약

본인,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날짜:.....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후 재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계,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공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계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거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전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계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정비, 승강기, 전차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계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② 사무관리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2급

※ 자격증(면허증) ①, 사무관리 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소속):	성명	(인)
	(직):		
	(전화):		

2018. . .

학과장	○ ○ ○ 날인
-----	----------

○ ○ 대 학(교) 총장(직인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 9]

2018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 □이 메 일 :
응시분야	□응시지역 : □응시분야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질의과목	□해당 과목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 경로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